

환경부
보도자료

2005년 12월 21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- '05.12.19배포
- 사진 없음
- 총 18쪽

환경정책실	이찬희 과 장	전화	2110-6679
환경경제과	노희경 서기관	(메일)	louie@me.go.kr

2. 우리나라 친환경상품 시장, 향후 5년간 5배 커진다

- ◇ 환경부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」 확정발표(12.21일)
- ◇ 친환경상품 관련 주요 목표 및 전망
 -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(조원) : 0.26('04)→0.9('07)→1.4('10)
 - 친환경상품 시장규모(조원) : 3.2('05)→10('07)→16('10)

환경부는 12.21(수)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위원회(위원장: 박선숙 차관)를 개최하여 「제1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」(계획기간 : 2006~2010)을 확정한다.

○ 친환경상품 분야의 국가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동 기본 계획은 향후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·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비전 및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.

동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국가 달성의 중요한 요소인 생산과 소비패턴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.

*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(WSSD)에서는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3대 목표중의 하나로 빈곤퇴치, 자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함께 ‘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’ 를 천명한바 있음

□ 동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기본 계획상 주요 목표 및 전망 >

○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획기적으로 증대

- 친환경상품 구매실적(비율) : 31%('04) → 60%('07) → 80%('10)
- 구매금액(원) : 2.5천억('04) → 9천억('07) → 1.4조('10)

○ 친환경상품의 시장도 대폭 확대

- 친환경상품 시장규모(원) : 3.2조('05) → 10조('07) → 16조('10)
- 친환경상품 인증대상품목(개) : 107('05) → 155('08) → 200('10)

○ 산업계의 녹색구매를 확대하고 녹색소비문화를 확산

- 소비자의 친환경상품 선호도
 - 환경마크제도 인지도 : 33%('05) → 50%('07) → 70%('10)
 - 친환경상품 사용경험 : 21.3%('05) → 35%('07) → 55%('10)

<주요 추진 계획>

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기반 강화

-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기관업무 평가항목에 반영하고, 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
- 구매담당자 대상 순회교육(연간 10회 이상)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친환경상품 관련 과정 반영 추진
- 구매계약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마련

- 지자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·보급 및 조례 제정 권고
-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,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 등 추진시 친환경상품 보급정책과 연계
- 친환경상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하고, 향후 「친환경상품 전자거래시스템」으로 발전

② 친환경상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

- 친환경상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 강화
- 환경마크제도와 우수재활용제도의 통합 검토
- 소기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환경마크 수수료 체계 개선
- 친환경상품 인증마크 무단 사용 및 허위광고 조사 강화
- 친환경 부품 소재 개발사업 지원 강화
-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소액·다품종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유통업체 양성
- 외국 환경라벨링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추진 확대

③ 민간분야의 녹색소비문화 확산

-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를 '10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대(현재 30개 업체 참여)
-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큰 인쇄서비스에 녹색구매 확대 적용

- 친환경상품 구매확산을 위한 입체적이고도 전방위적인 홍보 전개(생산업체, 시민단체 등과 연계)

□ 세계 최초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를 규정한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('05.7)에 이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세부추진사항이 포함된 동 기본계획이 수립·추진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친환경상품의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* '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'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분위기가 확산되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이 '04년 759억원에서 '05년 10월까지 2,204억원으로 대폭 증대된 바 있음

□ 환경부에서는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매지침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구매지침에 반영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다할 계획이다.

<참고자료>

붙임 :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기본계획(요약)

<붙임>

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(요약)

1. 기본계획의 근거 및 의의

□ 법적 근거 : 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5조

-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5년마다 국가차원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
- 기본계획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(위원장 환경부 차관)의 심의를 거쳐 확정(제4조·제5조)
 - 확정된 기본계획은 공공기관의 장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통보되어 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강구

□ 기본계획의 의의

- 환경부 및 중앙정부,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친환경상품 분야의 국가 종합계획
 -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, 산업계, 시민단체 등은 동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·추진
-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및 국가의 중기적인 친환경상품 활성화 정책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
 - 친환경상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, 생산·유통 시장 창출, 녹색구매 문화 확산 등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
- 친환경상품 육성을 위한 정부·공공기관, 산업계, 소비자·시민단체의 협력기반 구축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

II. 친환경상품 정책 추진경과 및 성과

가. 추진경과

□ 친환경상품 생산·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상품 인증제도 시행

- '92년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제품이 '92년 82개에서 '05.10월말 2,642개로 32배 성장
- '96년부터 재활용제품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(Good Recycled) 시행
- 환경부·건교부 공동 “친환경건축물 인증제” 시행('00)

□ 친환경상품 소비기반 확대

-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기반 조성
 - 친환경상품 시장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 및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('94)
 -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·시행('05.7)
- 친환경상품 정보제공, 교육·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 설립('05.9)

□ 친환경상품 생산기반 강화

- 차세대 핵심환경기술사업으로 친환경 소재·제품개발 사업 지원('01년 이후 100개 과제 319억원 지원)
- 제품 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친환경설계기법(Eco-design) 가이드라인 및 S/W 개발·보급
- 전과정평가에 근거한 제품의 “환경성적표지제도” 도입('02.2)

- 선진국 제품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“무역·환경정보네트워크” 구축·운영('05)

□ **친환경상품 판매지원**

-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('05년 50억원 규모), 백화점 등 유통매장 친환경상품 교환·판매매장(10㎡) 설치
- 해외 친환경상품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한 친환경상품 해외수출 촉진

□ **구매촉진 등 홍보·교육**

- 친환경상품 생산·구매촉진 위한 “녹색구매네트워크” 구성('99)
- 친환경상품 홍보 및 구매상담 등을 위한 친환경상품 전시회 및 구매촉진대회 개최 등

□ **국내 친환경상품 시장 규모는 '05년 약 3.2조원 규모(환경마크 기준)로 성장**

- 친환경상품 품목도 재활용제품(화장지·비누·건축자재류)에서 전기·전자, 사무용품, 건축자재 등으로 높은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요하는 제품으로 확대
-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및 구매촉진법 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친환경상품 구매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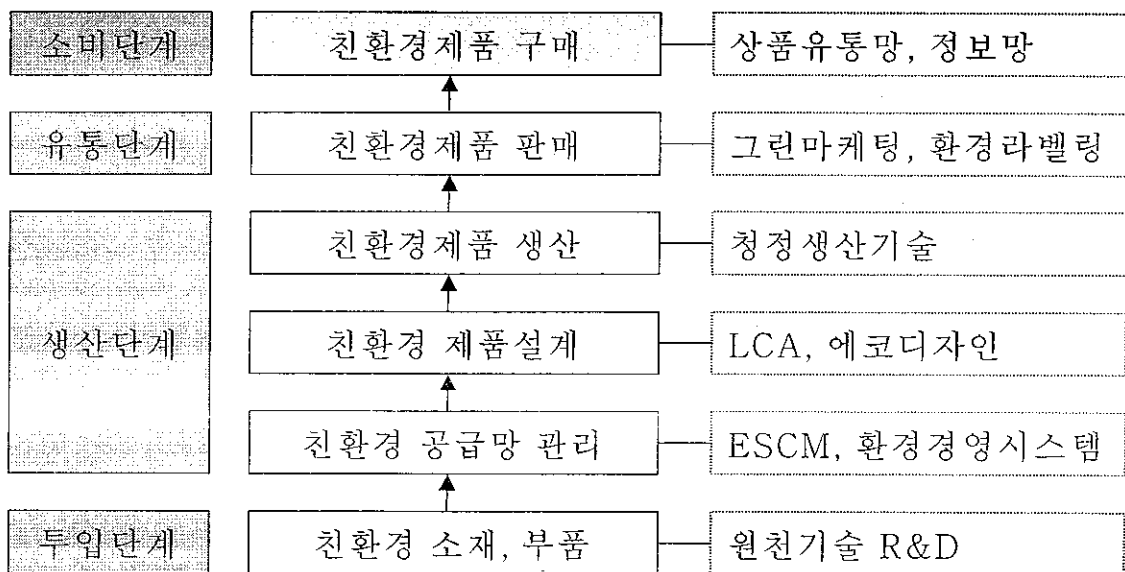
□ **친환경상품 보급은 환경오염 저감·자원의 절약, 인체 유해물질 저감을 통해 국가경제 전반에 기여**

- 친환경상품의 환경·경제적 편익은 제품 가격의 20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

나. 향후 여건 변화전망

□ 선진국 주도의 제품 환경정책 강화 및 무역연계

- 기후변화협약 등 240여개 국제환경협약 발효와 DDA·FTA 등 글로벌화된 국제정치·무역질서에서 환경이 중요 요소로 부각
 - EU를 중심으로 전기전자, 자동차, 화학분야 등에서 제품의 환경성 규제 본격화
- OECD 등 선진국은 '90년대 중반부터 공정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“제품중심 환경정책(IPP)”으로 전환



- 국제적인 친환경상품 시장은 2010년 7,083억불로 예상되며,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추세
 - 도하개발아젠다(DDA)의 시장개방 협상 등에서 선진국은 우위에 있는 친환경상품 및 기술시장 개방 노력

□ 선진국의 공공기관 녹색구매제도 확산

- OECD는 공공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,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가 강제성을 지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 권고('04.4월)
- 유럽연합(EU)은 '04년 조달지침 개정을 통해,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함
- 일본은 그린구매법 시행('01.6) 이후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가 대폭 증가
- 대만은 “정부구매법”에서 친환경상품 우선 조달, 가격차등제(10%) 등 규정('99년)

□ 국내 친환경시장 규모는 2010년 약 16조원으로 성장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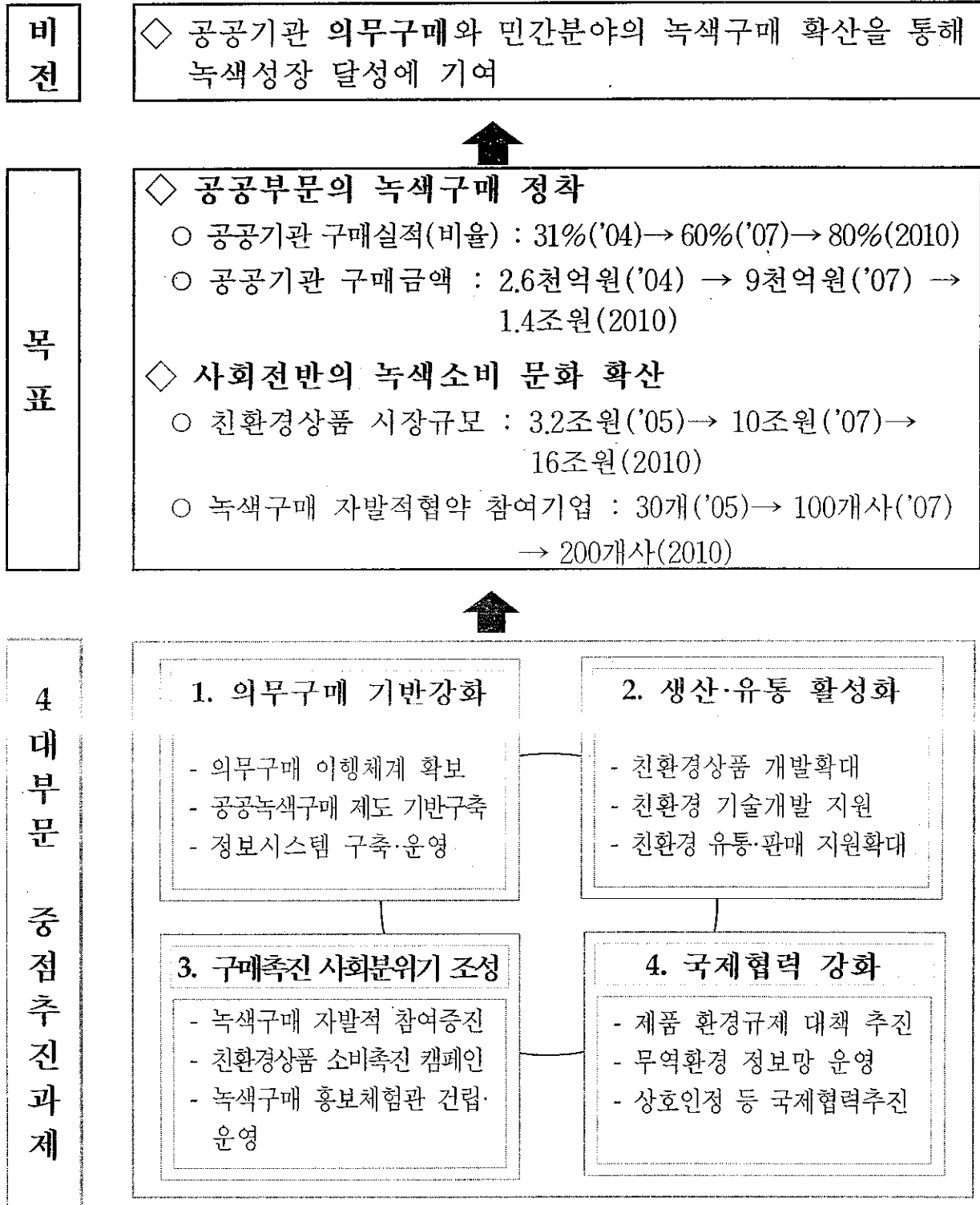
- 친환경상품구매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10년 약 1조 4천억원으로 확대 전망
- 사회적으로 친환경 트렌드가 강조됨에 따라 자기주장 친환경 상품의 등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

□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성 요구

-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(CSR) 강화와 지속가능성 공표 강화
-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산업계의 녹색구매가 활성화될 경우 큰 규모의 친환경상품 시장 형성 가능
 - 산업계는 통상 매출액의 3%를 소모품류 구매에 사용

IV. 기본계획의 비전과 성과

1.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



2.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

공공부문의 녹색구매 정착

-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제도 정착
 - 친환경상품(물품) 구매실적 : 31%('04) → 60%('07) → 80%(2010)
 - 구매금액 : 2.6천억원('04) → 9천억원('07) → 1.4조원(2010)
 - 계약서 등 친환경구매근거 마련 0%('04) → 20%('07) → 50%(2010)
- 자치단체 녹색구매 조례 제정 : 0개('05) → 50개('07) → 100개(2010)

친환경상품 시장 활성화

- 환경마크 인증대상 품목 : 107개('05) → 155개('08) → 200개(2010)
- 친환경상품 시장규모 : 3.2조원('05) → 10조원('07) → 16조원(2010)

녹색구매 문화 정착

- 소비자의 친환경상품 선호도
 - 환경마크제도 내용 인지도 : 33%('05) → 50%('07) → 70%(2010)
 - 친환경상품 사용경험 : 21.3%('05) → 35%('07) → 55%(2010)
-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 : 30개사('05) → 100개사('07) → 200개사(2010)

IV. 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 내용

1.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기반강화

1)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체계 확보

- 공공기관 구매실적·계획 공표 관리강화 및 의무구매 지원체계 구축
- 공공기관별 친환경상품 업무담당자 지정 및 구매실적을 기관 업무 평가항목에 반영
-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실태 점검 및 수범사례 전파
-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에 따른 친환경상품 시장창출 및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 수행
-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(연간 10회이상) 및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 개최

2) 공공분야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구매계약서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마련
- 구매 계약관련 문서·규격 등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반영
- 친환경상품 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 구매방식 도입 권고 및 공공기관-조달청을 통한 이중 점검 실시
- 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지침에 친환경상품 사용조건 반영

□ 공사분야의 친환경상품 확대

- 공사 등에 사용가능한 친환경상품 품목 발굴 및 공공기관 시행 공사에서의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구매 유도
- 가격·품질과 환경성을 동시 고려하는 시설공사 관련 제 기준 개정
 -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 및 전문시방서, 자재시방서 등에 친환경자재 구매 근거 반영
 - 공공기관 청사, 학교건물 등 신·증축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유도
 - 환경부의 상·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등을 개정 친환경상품 사용 확대

□ 지자체의 녹색구매 조례제정 지원

- 지자체의 체계적인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표준조례안 마련 및 조례제정 권고('06)
-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 녹색구매 조례제정 운동 전개 및 녹색구매 조례 DB화, 우수사례 발굴·전파('07~)

□ 녹색구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간 연계강화

-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,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시 친환경상품 구매 유도
- BTL·턴키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시 친환경상품 구매자 우대 근거 마련 및 사업시행자에게 친환경상품 정보제공
- 중소기업·장애인·여성기업 제품 등 타 우선구매제도와의 조화 및 친환경성 확보 지원사업 추진

3)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구축운영

- 친환경상품 정보 DB 구축('06)으로 의무구매제도 고객인 공공기관, 조달청, 기업 등에 One-stop 서비스 제공
- 친환경상품 구매실적·집계 관리시스템 구축('06)

2 친환경상품 생산·유통 활성화

1) 친환경상품 개발 확대 및 제도개선

- 공공기관·산업계·일반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상품 인증품목 지속 확대

< 연도별 친환경상품 확대계획 >

연도	'05	'06	'07	'08	'09	2010
환경마크	107	120	135	155	180	200

- 공공기관 수요가 큰 청소대행, 인쇄 등 서비스업종 인증 추진
- 환경마크 및 GR인증품목에 대해 단기적으로 재활용율·품질기준을 일치시키고, 중장기적으로 제도 통합을 검토·추진
- 환경마크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인증신청 수수료 현실화 및 중소기업 인증 부담 경감방안 강구
- 재활용제품의 품질관리와 인증상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친환경상품 품질 개선 및 인증제도 신뢰성 확보
-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표지제도 연계 운영
- 환경마크는 최종제품(B2C·B2G 일부 포함), 환경성적표지는 소재·부품 등 중간제품과 B2B 위주로 시행

2) 친환경상품 개발·유통·판매 지원

친환경상품 개발을 위한 지원강화

-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친환경 부품·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 확대
- 친환경 부품·소재 정보망 구축·운영을 통해 개발된 친환경 부품·소재 사업 시장 육성

친환경상품 개발 기술지원 및 교육강화

- 환경기술인력 양성교육사업 및 에코디자인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상품 교육 프로그램 추진
- 환경컨설팅업 육성을 통한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지원

3) 친환경상품 유통·판매 지원확대

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지원 강화

- 재활용제품 위주 유통매장 용자지원사업을 친환경상품으로 확대 (재활용제품 취급비율 폐지 또는 최소화)
- 친환경상품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 운영자금 지원 확대(現 50억원 → 2010년 100억원)

기업용 소모용품(MRO) 전문업체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친환경상품 개발·유통 확대

해외 환경라벨링 상호인정협정 확대,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친환경상품 수출 촉진

1) 산업계, 시민단체의 녹색구매 활성화

- 2010년까지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협약 참여기업을 200개 기업까지 확대하여 산업계의 녹색구매 활성화 유도
- 참여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협약의 실효성 확보
-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녹색구매 협력모델 구축
- 녹색구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의 활동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

2)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교육·홍보

- 친환경상품 소비촉진 홍보활동 강화
- TV 공중파,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친환경상품 편익 집중 홍보 및 생산업체·시민·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소비 문화 조성
-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 등과 연계한 친환경상품 전시회 개최로 시너지 효과 창출
- 녹색소비교육 강화
- 친환경적 소비문화 필요성 및 친환경상품 구매·사용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실시
- 시민단체,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녹색구매 강좌 반영 추진
- 녹색구매 지도자(친환경상품 해설사) 양성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1) 환경라벨링 국제협력 강화

- 국가간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확대(5개국 → 10개국) 및 환경마크 품목별 인증기준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
- 환경마크제도 국제 신뢰성 증진
- 국제에코라벨링네트워크(GEN)의 국제통합에코라벨링 시스템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라벨링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

2) 친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대응·협력

- DDA, FTA 등 친환경상품 무역자유화 협상대책 마련
- 친환경상품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이를 기반으로 대응방안 마련
- 국제기구 및 역내 국가간 녹색구매 확대 네트워크 구축
- 해외 친환경상품 시장동향 분석
- 각국에서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시장동향 조사 및 산업계 전파

3) 국제 제품 환경규제 대응

- One-Stop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구축
- 정보수집 대상 국가 확대, 국내 환경규제 정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DB를 지속적으로 확충